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 5. 27 선고 2019가단243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1. A

2. B

피 고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1. C

소송대리인 D

2. D

변론 종결 2020. 4. 29

판결 선고 2020. 5. 27

주 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22,920,000원, 원고 B에게 15,28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2,920,000원, 원고 B에게 15,28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E의 처, 원고 묘은 E의 아들이다.

나. 므는 2019. 12. 3. 18:27경 급성 심정지로 사망하였다(이하 E를 '망인'이라 한다).

다. 피고 D는 보관하고 있던 망인의 현금인출카드를 이용하여 망인 사망 이후인 2019. 12. 1. 20:11경부터 20:16경까지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총 38,2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C이 망인의 사망 후 상속인인 원고들의 동의 없이 망인의 예금계좌로부터 38,2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C은 법률상 원인 없이 38,200,000원의 이득을 얻고, 원고 들에게 위돈중 각 상속분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A에게 22,920,000원[= 38,200,000원 x 상속분 3/5], 원고 B에게 15,280,000원[= 38,200,000원 x 상속분 2/5]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 38,200,000원을 인출하는 것을 승낙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아울러 피고 C 은 망인의 모친인 망인에 대하여 38, 200, 000원을 초과하는채권이 있었으므로, 피고 C이 위 돈을 망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것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도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피고 C의 주장대로 F가 망인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F가 원고들을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이지 그와 같은 사 정만으로 피고 C이 원고들의 동의 없이 망인의 계좌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것이 법률 상 원인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D가 망인의 계좌에 연결된 현금인출카드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 피고 D가 위 카드를 이용하여 망인의 계좌에서 38,2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돈을 송금받은 계좌는 피고 C의 계좌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 D가 위 송금행위를 통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권은석